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주거기본법」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신혼부부, 장애인, 고령자 등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, 그 밖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이에 대통령령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층, 옥상층 거주자 등 추가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③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
2. 건축물의 옥상층 등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주거실태조사의 실시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3조(주거실태조사의 실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</u> 1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2. <u>건축물의 옥상층 등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⑤ ----- ----- 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③ (생략) 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<u>제3항</u> 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⑤ (생략)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60